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하영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0112호)
- 김태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0333호)
- 정찬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120호)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336호)
- 김성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761호)

2021.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5
1. 공급약관의 변경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시 변경 내용 사전 고지 (하영제 의원안 제17조제2항)	7
2. 한전 착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시 요금감면 또는 분할납부 허용(하영제 의원안 제17조제3항)	12
3. 송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비용 분담(김태흠·정찬민 의원안)	16
4. 전력기금의 사용처 중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 및 상향입법 (박대출 의원안)	22
5. 통합발전소제도 도입(김성환 의원안)	28

I . 제안경위

【하영제 의원안】

1. 발 의 자 : 하영제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1. 5. 14.
3. 회부연월일 : 2021. 5. 17.

【김태흠 의원안】

1. 발 의 자 : 김태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1. 5. 24.
3. 회부연월일 : 2021. 5. 25.

【정찬민 의원안】

1. 발 의 자 : 정찬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1. 6. 28.
3. 회부연월일 : 2021. 6. 29.

【박대출 의원안】

1. 발 의 자 : 박대출의원 등 43인
2. 발의연월일 : 2021. 7. 5.
3. 회부연월일 : 2021. 7. 6.

【김성환 의원안】

1. 발 의 자 : 김성환의원 등 30인
2. 발의연월일 : 2021. 7. 27.
3. 회부연월일 : 2021. 7. 2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영제 의원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경우 약관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현행법에도 공급약관을 시행하기 전에 전기판매사업자의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설명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이 변경되어도 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착오로 인하여 전기요금을 누락하여 청구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그동안의 미납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청구된 전기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전기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의 변경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자에게 미리 변경된 공급약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전기요금의 일부가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기사용자에

게 전기요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김태흠 의원안】

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송전탑, 송전선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법은 지중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요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임. 따라서 타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로 피해를 겪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9호의2 신설).

【정찬민 의원안】

현행법은 전주와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송전탑·송전선로가 있는 지역의 경우 미관상 문제, 전
자파,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
생하여 해당 설비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지중화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
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1항).

【박대출 의원안】

현행법은 ‘전원개발 촉진사업’,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에도 전
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업
체의 손실이 커지자, 시행령상 전력기금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음.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조성하
는 것이므로 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중 탈원전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김성환 의원안】

최근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표명하였음.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간헐성과 변동성도 또한 증가하여 전력계통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 자원이 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 수요자원 등이 보조자원으로 참여하는 통합발전소를 구성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입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통합발전소를 중앙급전발전기와 같이 취급하여 거래를 위한 기준을 만족하는 통합발전소가 입찰한 발전량에 대해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급전지시를 받게 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① 출력변동성이 큰 신재생발전을 중앙급전발전기화 하여 출력변동성을 완화하고 ②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 ③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

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이에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2호, 제31조제7항 및 제39조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7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공급약관의 변경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시 변경 내용 사전 고지 (하영제 의원안 제17조제2항)

하영제 의원안 제17조제2항은 공급약관의 변경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사용자에게 미리 변경된 공급약관의 내용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생략) <신설>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의 변경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자에게 미리 변경된 공급약관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u>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공급약관이 변경되어도 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의 공급약관 변경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자에게 미리 변경된 공급약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경우 약관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기판매사업자가 면제되는 것은 「약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약관의 명시 의무(교부 포함)이며 제3조제3항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표 2] 「약관법」 관련 규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표 3]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u>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추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u>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16조제4항은 한전이 약관을 영업소 및 사업소에 비치하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한전이 「약관법」 제3조제2항의 명시적무를 면제받고 있는 것을 보완하는 의미로 해석됨.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약관법」 제3조제2항의 명시적무는 면제되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제3항의 설명의무 및 「전기사업법」 제16조제4항의 비치 및 열람의무가 한전에게 적용되고 있고,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언론홍보, 홈페이지·모바일App·사업소 게시, 안내문 우편 발송, 청구서 표기 등을 통해 전기사용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약관법」

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또한 「약관법」에 규정된 설명(고지) 의무의 세부 내용은 약관 규제에 관한 일반법인 「약관법」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명(고지) 의무 대상을 요금 상승 등으로 특정할 경우, 현행 약관법 대비 설명(고지) 의무 대상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한전이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현행 제16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며, 언론홍보나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전기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는 하나,

현행 「약관법」 제3조제3항의 설명의무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의무 부과 여부가 결정¹⁾되고 있어 모든 약관의 변경 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중 략).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

또한 한전은 필수재의 성격을 지니는 전기의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데, 현재의 공급약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나 인가가 있으면 전기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도 가능하며 전기사용자는 변경된 요금 및 공급조건을 따라야 함.

[표 4] 한전 약관 중 약관의 변경 관련 규정

「기본공급약관」

제 3 조 (약관의 인가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 ②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한 약관을 따릅니다.

제 4 조 (시행세칙)

- ① 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취지에 따라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합니다)으로 정하며, 약관과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결정합니다.
- ② 전기요금이나 시설부담금의 인상, 전기요금이나 보증 등의 감면요건의 삭제, 계약종별 적용기준의 불리한 변경 등 중요한 세칙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한전이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합니다.

제 5 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 ①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약관 이외의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지’는 약관과 법령의 규정 내용, 법령의 형식 및 목적과 취지,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한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공급약관」

제 3 조 (약관의 변경)

한전은 필요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한 약관을 따릅니다.

따라서 한전의 약관 변경 시 일정한 기준에 따른 고지의무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사용자에게 약관의 변동 사실을 전자납부고지서나 우편납부고지서에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²⁾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한전 착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시 요금감면 또는 분할납부 허용(하영제 의원안 제17조제3항)

하영제 의원안 제17조제3항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착오로 전기요금의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추가로

2)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03)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생략)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생략)
<신설>	③ 전기판매사업자의 착오로 전기요금의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고지의 범위·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전기요금의 감면·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한전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누락하여 청구한 이후 그 동안의 미납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청구된 전기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전기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바, 전기사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 할 것임.

실제 한전측의 사유로 전기요금을 과소청구한 이후 분납청구한 건

수는 2020년에는 127건이었으며, 2021년에는 5월말 기준 38건으로 나타남.

[표 6] 전기요금 과소청구 이후 분납청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년		‘21. 5월말 현재		합 계	
	한전사유	고객사유	한전사유	고객사유	한전사유	고객사유
건 수	127	30	38	7	165	37

※ 고객측 사유 : 고객설비 이상(계량 부속장치 고장, 옥내 누전 등)

※ 한전측 사유 : 전력량계 고장, 결선 착오, 검침 착오 등

자료: 한전

이처럼 한전이 한전측의 사유로 과소청구된 전기요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면 전기사용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약관을 통해 전기 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으로 정해지는데,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또한 요금감면은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한 고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분할납부와 관련하여서는 한전은 이미 과소 청구된 차액에

대한 분할납부 제도를 약관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7] 한전 약관 중 추가청구 요금의 분할납부 관련 규정

한전 약관

제76조(요금의 재계산에 따른 환불 및 추가청구)

- ① 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당월분 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금을 재계산한 경우에도 요금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② 한전의 잘못으로 요금을 과다청구하여 납부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세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③ 한전이 요금을 과소청구하여 추가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고객은 세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한전은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다만, 한전의 잘못으로 요금을 과소청구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한전 약관 세척

제58조의2(추가청구 요금의 분할납부)

- ① 약관 제76조(요금의 재계산에 따른 환불 및 추가청구) 제3항에 따라 추가 청구한 요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은 요금이 잘못 계산된 기간을 한도로 한다.
- ② 제1항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은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5항을 준용한다.

3. 송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비용 분담(김태흠 정찬민 의원안)

김태흠 의원안과 정찬민 의원안은 송전선로 지중이설에 대한 비용 분담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임.

현행법 제72조의2³⁾는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한전)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최대 50%)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자체와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해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25년까지는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72조의2에 따른 지중이설의 대상은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로 이는 ‘배전선로’에 해당하고 ‘철탑과 철

3)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탑사이에 설치된 전선로'인 '송전선로'는 해당되지 않는다,4)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에 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고, 현재 송전선로가 한전 소유일 경우 한전 내부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요청자(지자체)가 100% 비용을 부담하되, 공익적 목적인 경우 한전과 요청자가 각각 50%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5).

이와 관련하여 김태흠 의원안은 현행 제49조(기금의 사용)를 개정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의 송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표 8] 김태흠 의원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9. (생략) <u><신설></u>	제49조(기금의 사용) -----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의 송전선로 지중이설 사업</u>

4)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은 배전선로의 지중이설 요청권을 법령상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 이는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이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반면, 그 지중이설의 수혜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사회적 효용이 크지 않으며 생명이나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8.5.31. 선고 2014헌마925 결정)

5) 최근 5년간 ('16~'20년) 13건의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총공사비 2,642억)

현행	개정안
9의2. (생략) 10. · 11. (생략)	9의3. (현행 제9호의2와 같음) 10. · 11. (현행과 같음)

정찬민 의원안은 현행 제72조의2제1항에 송전선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지역의 송전선로 지중이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제72조의2제2항 본문)하되, 공익적 목적인 경우 한전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제72조의2제2항 단서)할 수 있게 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여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제72조의2제3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표 9] 정찬민 의원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 소유자는 <u>전주</u> 와 그 <u>전주</u> 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u>전주</u> 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 ---- <u>송전탑·전주</u> --- <u>송전탑·전주</u> ----- -- <u>송전탑·전주</u>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두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송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에 대하여 한전 및 국가의 비용 부담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일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2.9%의 지중화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89.6%)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과 경북(이상 1.3%)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에서의 송전선로는 대부분 접속설비에 해당하는데,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지중이설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표 10] 송전선로 지중화율

광역시·도	회선길이(C-km)			지중화율(%) (’20년말 기준)
	가공	지중	합계	
서울	108	933	1,041	89.6%
경기	4,894	1,098	5,992	18.3%
인천	209	569	778	73.1%
충북	2,077	51	2,128	2.4%
충남	3,039	39	3,078	1.3%
대전	310	126	436	28.9%
세종	201	52	253	20.6%
강원	3,547	70	3,617	1.9%
전북	2,114	154	2,268	6.8%
전남	3,188	178	3,366	5.3%
광주	195	147	342	43.0%
경북	4,692	64	4,756	1.3%
경남	3,445	116	3,561	3.3%
대구	520	200	720	27.8%
부산	472	412	884	46.6%
울산	804	58	862	6.7%
제주	380	202	582	34.7%
합계	30,195	4,469	34,664	12.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송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은 한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찬민 의원안의 경우 공익목적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규정하여 한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므로 개정에 동의하는 입장임.

그러나 김태흠 의원안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에서의 송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서만 전력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변전소 등 여타 기피시설과 관련된 유사입법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별도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⁶⁾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하여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수계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표 11] 현행 발전원별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

발전원	주변지역 범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원자력·화력	시설용량 1만kw 초과 발전소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신·재생	시설용량 2천kw 초과 발전소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구역 전기사업자	시설용량 1천만kw 초과 발전소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수 력	댐상류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기 타	하천법 상 하천구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으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양수발전소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조 력	방조제 안쪽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기 타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해상풍력	육지	육지의 해안선 중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지점(최근접해안지점)을 기준으로 반지름 5km 이내의 해안선에서 육지 방향으로 수직 2km 이내의 육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섬	발전기를 중심으로 발전기에서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해역에 속하는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두 개정안은 송전선로로 인한 안전상·미관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 및 지역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전력기금의 사용처 중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 및 상향입법(박대출 의원안)

개정안은 전력기금의 사용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제49조제12호를 삭제하고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처를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표 1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5.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49조(기금의 사용)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u> <u>4의3.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존을 위한 사업</u> <u>4의4.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u> 5. (현행과 같음) <u>5의2.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u> <u>5의3.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u> <u>5의4.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평가</u>

현행	개정안
<신설>	및 검사시설의 구축
<신설>	5의5.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6. ~ 11. (생략)	5의6.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6. ~ 11.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제49조제1호부터 제11호는 전력기금의 사용처로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조 제12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전력기금의 사용처 중 일부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4조는 전력기금의 사용처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표 13] 전력기금의 사용처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9의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 10의2. 삭제 <2020. 3. 31.>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 1의2.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존을 위한 사업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4.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업체의 손실이 커지자, 시행령상 전력기금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⁷⁾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조성하는 전력기금의 사용처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려는 취지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적으로 법령체계는 법률에 모든 사항을 담을 수 없고,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일부사항을 위임 중이며, 대부분의 타 사업성 기금의 경우⁸⁾에도 기금의 사용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신규 지출수요에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전력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내 전력기금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존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현재 2차례 입법예고를 마침.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간 : 2021. 4. 28. ~ 2021. 5. 6.)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기금의 사용)

8. 원자력발전의 감축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의 비용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의 이행으로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한다.

8) 농지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외 다수

한편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한수원의 원전 감축 비용 보전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전력기금 사용처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제49조제12호가 삭제되는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한 비용 보전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령에 따른 기금의 사용 역시 예산편성·지원을 위해서는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국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여 새로운 전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력기금 설치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도 부합한다는 입장임.

더욱이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은 국무회의 의결(‘17.10.24)을 통해 이미 대외적으로 발표⁹⁾되었는바, 전기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고 정책 신뢰성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임.

9)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 국무회의)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

참고로 한수원에 대하여 보전하는 원전감축 비용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백지화된 신규원전 건설 관련 비용인데,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을 백지화하였으며, 약 5,655억원을 설비투자(2006년~2014년)하고 1,310억원을 지역상생합의금으로 지출하며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하였음.

현재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이 '23년 12월까지 연장된 상태인데,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백지화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음.

[표 14] 신규원전 건설 관련 지출비용(2019년 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지 출 비 용
신한울 3·4	공사, 용역, 설계 등	1,006
	인건비, 홍보비 등	457
	소계	1,463 (잠정)
천지 1·2	부지 매입	546
	기타용역 및 관리비용	433
	소계	979 (잠정)
대진 1·2	기타용역 및 관리비용	35
신규 6기 총계(억원)		2,477 ± α

주1) '19.12월말 기준 추정 지출비용으로 지역상생합의금 환수 여부, 주기기 사전제작비, 매입부지 매각시 환수금, 소송패소시 배상금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주2) α: 신한울 3·4 관련 지역상생합의금, 주기기 사전제작비 등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천지 1·2 관련 기 매입 부지 환매 등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기금의 사용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모두 규정할 것인지 여부 및 에너지전환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제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에서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¹⁰⁾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5. 통합발전소제도 도입(김성환 의원안)

개정안은 정의규정에 ‘통합발전소사업’을 추가하고,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표 15] 개정안 조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21. (현행과 같음) <u>22. “통합발전소사업”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u>

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01377)

현행	개정안
제31조(전력거래) ① ~ ⑥ (생략) <신설>	<u>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연결·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u> 제31조(전력거래)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통합발전소 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u>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8. (생략) <신설>	제39조(회원의 자격) ----- ----- ----- 1. ~ 8. (현행과 같음) <u>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u>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간헐성과 변동성도 또한 증가하여 전력계통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밝히고 있는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 자원이 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 수요자원 등이 보조자원으로 참여하는 통합발전소를 구성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입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 하겠음.

개정안 제2조제22호는 ‘통합발전소사업’을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연결·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다양한’ 등의 문구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31조제7항은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이 전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제39조제9호는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으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통합발전소 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신설할 필요가 있고, 전력거래의 주체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자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개정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7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458